

「제60장 수출입 조례」

[법률, 2015.2.6., 개정]

□ 개요

홍콩 「수출입 조례」는 홍콩을 드나드는 항공기·선박·여객선과 홍콩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홍콩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단속 및 관련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8부 4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홍콩 세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수출입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 수출입 정보 검증 및 면허 확인
- 정보 및 통계 자료 관리
- 관련 법령 및 제도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단속

□ 목차

원문	번역문
<p>第I部 導言</p> <p>1. 簡稱</p> <p>2. 釋義</p> <p>2AA. 認可機場區的部分為貨物轉運區</p> <p>2A. 本條例對《保護臭氧層條例》的適用</p>	<p>제I부 머리말</p> <p>1. 약칭</p> <p>2. 해석</p> <p>2AA. 공항구역 일부를 화물 운반구역으로 인가</p> <p>2A. 이 조례의 《오존층보호조례》에 대한 적용</p>
<p>第IA部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的特別條文</p> <p>2B. 關於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資料的推定</p> <p>2C. 保安裝置的妥善保管</p> <p>2D. 指明代理人的責任</p>	<p>제IA부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별조문</p> <p>2B.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송출하는 자료에 관한 추정</p> <p>2C. 보안장치의 적정한 보관</p> <p>2D. 지정 대리인의 책임</p>
<p>第II部 行政決定及上訴</p> <p>3. 署長發出、取消、撤銷或</p>	<p>제II부 행정결정 및 상소</p> <p>3. 서장¹의 허가증 발급, 취</p>

¹ 서장(署長): 공상무역서(工業貿易署) 서장(Director-General of Trade and Industry)을 가리킨다.

<p>暫時吊銷許可證的酌情決定權</p> <p>4. 關長委任獲授權人員的權力</p> <p>4A. 獲委任人員</p> <p>5. 關長或署長及其他公職人員須符合行政長官的指示</p> <p>6. 向行政長官提出的上訴</p>	<p>소, 철회 또는 잠정 말소에 관한 참작 결정권</p> <p>4. 세관장²이 수권자에게 위임하는 권한</p> <p>4A. 위임받은 자</p> <p>5. 세관장·서장 및 그 밖의 공직인원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장관의 지시</p> <p>6. 행정장관에 대한 상소</p>
<p>第IIA部 若干出口紡織品的生產通知書</p> <p>6AA. 本部的定義及適用範圍</p> <p>6AB. 呈交生產通知書</p> <p>6AC. 生產通知書的認可</p> <p>6AD. 署長就認可生產通知書的酌情決定權</p>	<p>제IIA부 일부 수출방직품의 생산통지서</p> <p>6AA. 이 부의 정의와 적용범위</p> <p>6AB. 생산통지서의 제출</p> <p>6AC. 생산통지서의 인가</p> <p>6AD. 서장의 생산통지서 인가에 관한 참작결정권</p>
<p>第III部 禁運物品等</p> <p>6A. 輸入和輸出戰略物品的限制</p>	<p>제III부 운송금지 물품 등</p> <p>6A. 전략물품의 수출입 제한</p>

² 세관장: 홍콩세관(香港海關) 관장(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을 가리킨다.

6B. 為施行第6A條而由署長作出的命令等	6B. 제6A조의 시행을 위해 서장이 내리는 명령 등
6C. 輸入某些禁運物品的限制	6C. 일부 운송금지물품의 수입 제한
6D. 輸出某些禁運物品的限制	6D. 일부 운송금지물품의 수출 제한
6E. 在香港水域運載訂明物品等的限制	6E. 홍콩수역에서 지정물품의 운반 등의 제한
6F. 為施行第6C至6E條由署長作出命令等	6F. 제6C조에서 제6E조를 시행하기 위해 서장이 내린 명령 등
7. 禁運物品進口後的管有	7. 운송금지물품의 수입 후 제재
8. 向署長交付進口許可證及艙單	8. 서장에 제출하는 수입허가증 및 화물선적명세서
9. 就部分裝運的貨物須交付進口許可證及艙單	9. 일부 운송 화물에 대해 수입허가증 및 화물선적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경우
10. 禁止承運人接載無許可證的禁運物品出口	10. 운송업자 허가증이 없는 운송금지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하는 행위의 금지
11. 向署長交付出口許可證及	11. 서장에 제출하는 허가증

<p> 艙單</p> <p>11A. 署長有權取用向關長呈交的艙單</p> <p>12. 禁運物品的檢查及貯存</p> <p>13. 對沒有擁有人的禁運物品的聲請及處置</p> <p>第IV部 未列艙單貨物及走私</p> <p>14. 為走私用途而更改船隻、飛機或車輛</p> <p>14A. 為走私用途而建造船隻等</p> <p>15. 提供一切貨物詳情的責任</p> <p>16. 對未獲授權而在船隻等放置貨物的禁止</p> <p>17. 所有貨物須記錄於艙單內</p> <p>18. 輸入或輸出未列艙單貨物</p>	<p> 및 화물선적명세서</p> <p>11A. 서장이 취용하거나 세관장에 제출할 권리가 있는 화물선적명세서</p> <p>12. 운송금지물품의 조사 및 저장</p> <p>13. 소유인이 없는 운송금지물에 대한 신청 및 처치</p> <p>제IV부 무표시화물 및 밀수</p> <p>14. 밀수를 위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개조</p> <p>14A. 밀수를 위한 선박의 개조 등</p> <p>15. 모든 화물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p> <p>16. 수권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화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p> <p>17. 모든 화물은 반드시 화물선적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함에 관한 규정</p> <p>18. 무표시화물의 수입 또는</p>
--	---

<p>的罪行</p> <p>18A. 協助輸出未列艙單貨物等</p> <p>19. 向關長提供列明停靠港的書面名單</p>	<p>수출에 관한 범죄행위</p> <p>18A. 무표시화물의 수출 협조 등</p> <p>19. 세관장에 항구 정박을 위해 제출하는 서면 명단</p>
<p>第V部 調查權</p>	<p>제V부 조사권</p>
<p>20. 海關人員等的一般權力</p> <p>20A. 在知悉進口商身分之前可禁止移離物品</p> <p>20B. 從船隻等移離物品以供查驗的規定</p>	<p>20. 세관원 등의 일반적인 권한</p> <p>20A. 수입업자의 신원 확인 전 화물 이동 금지</p> <p>20B. 선박 등에서 화물을 이동하여 검사에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p>
<p>21. 海關人員等的特別權力</p> <p>22. 海關人員等在行使特別權力時的限制</p> <p>23. 獲授權人員及海關人員的逮捕權</p>	<p>21. 세관원 등의 특별 권한</p> <p>22. 세관원 등이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한</p> <p>23. 수권받은 자 및 세관원의 체포권</p>
<p>24. 調查涉嫌罪行的附帶權力</p> <p>25. 將處所、船隻等上鎖及加貼封條</p>	<p>24. 범죄와 관련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부가적 권한</p> <p>25. 장소·선박 등의 봉쇄 및 봉인 용지 부착</p>

<p>26. 對海關人員等的妨礙</p> <p>第VI部 沒收</p> <p>27. 被檢取的物品等可予沒收</p> <p>28. 對沒收的申請的裁定</p> <p>29. 聆訊前發還被檢取船隻及車輛的權力</p> <p>29A. 處置易毀消物品等的權力</p> <p>29B. 上訴時擱置執行命令</p> <p>30. 要求發還沒收的物品等的聲請</p> <p>第VII部 規例</p> <p>31. 訂立規例的權力</p> <p>32. 藉立法會通過決議而徵費的權力</p> <p>第VIII部 雜項</p> <p>32A. 在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並非切實可行的情況</p>	<p>26. 세관원 등에 대한 방해</p> <p>제VI부 몰수</p> <p>27. 검사하여 압류된 물품 몰수 가능 여부</p> <p>28. 몰수 신청에 대한 재결</p> <p>29. 청문 전 검사하여 압류된 선박 및 차량에 대한 반환 권한</p> <p>29A. 훼손이 용이한 물품 등의 처리 권한</p> <p>29B. 상소 시 집행명령의 보류</p> <p>30. 몰수한 물품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p> <p>제VII부 규제</p> <p>31. 규제 제정의 권한</p> <p>32. 입법회 결의안 통과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는 권한</p> <p>제VIII부 그 밖의 조문</p> <p>32A.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 확실하지</p>
--	--

<p>下提供資料</p> <p>32B. 提供與道路車輛運載的貨物有關的艙單資料</p> <p>33. 有關證據的條文</p> <p>33A.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送出的資料的紀錄證明書</p> <p>34. 法庭程序中的舉證責任</p> <p>35. 本條例對郵包的適用</p> <p>35A. 協助運載禁運物品等</p> <p>36. 關於許可證、生產通知書等的罪行</p> <p>36A. 法團董事、合夥人等的罪行</p> <p>36B. 提起刑事法律程序無須行政長官的同意</p> <p>36C. 與保安裝置的使用或保管有關的罪行</p> <p>36D. 指明代理人的罪行</p>	<p>아니한 상황 하에서의 자료 제공</p> <p>32B. 도로 차량이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된 화물선적명세서에 대한 자료 제공</p> <p>33. 증거에 관한 조문</p> <p>33A.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송출하는 자료의 기록증명서</p> <p>34. 법정절차 중의 입증책임</p> <p>35. 우편소포에 대한 이 조례의 적용</p> <p>35A. 금지물품의 운송 협조 등</p> <p>36. 허가증, 생산통지서 등에 관한 범죄행위</p> <p>36A. 법인이사, 조합원 등의 범죄행위</p> <p>36B. 형사 법적절차의 제기 시 행정장관의 동의를 없어도 되는 경우</p> <p>36C. 보안장치 사용 및 보관과 관련된 범죄행위</p> <p>36D. 지정 대리인의 범죄행위</p>
---	--

37. 提起刑事法律程序的時間限制	37. 형사 법적절차 제기에 대한 시간 제한
38. 告發人	38. 고발인
39. 附表的修訂	39. 별표의 개정
40. 一般彌償	40. 일반 보상
41. 在《1993年進出口(修訂)條例》#生效日期前未根據本條例處理的物品	41. 《1993년 수출입(개정)조례》에 기록된 #효력발생일자에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물품
42. 過渡性條文	42. 경과 조문
附表1 須發出強制性命令沒收的物品(如該等物品為可予沒收者)	별표1 강제 명령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물품(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물품)
附表2 指明團體	별표2 지정 단체
附表3 指明代理人	별표3 지정 대리인